



## 규정


### 산학협력단 법인정관

문서번호	TWP-A601
제정일자	2004. 03. 01.
개정일자	2015. 09. 22.
개정번호	페이지 1/7

## 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
- 제3장 재산 및 회계
- 제4장 보칙
- 부칙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1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<b>산학협력단 법인정관</b>	개정일자	2015. 09. 22.
		개정번호	페이지 3/7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정관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에 따른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6. 4>


**제2조 (명칭)** 이 법인의 명칭은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<개정 2012. 6. 4>

**제3조 (사무소 소재지)**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에 둔다.<개정 2012. 6. 4>

**제4조 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** ① 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6. 4>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2. 6. 4>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<개정 2012. 6. 4>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<개정 2012. 6. 4>
6.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<개정 2012. 6. 4>
7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. 다만,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행정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4>
  - 가.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·조정<개정 2012. 6. 4>
  - 나. 산업교원과 학생의 창업 지원<개정 2012. 6. 4>
  - 다.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<개정 2012. 6. 4>
  - 라. 이 대학 안에 설치·운영 중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<개정 2012. 6. 4>
  - 마. 이 대학 안에 설치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<개정 2012. 6. 4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1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<b>산학협력단 법인정관</b>	개정일자	2015. 09. 22.
		개정번호	페이지 4/7

- 바.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<개정 2012. 6. 4>
- 사.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<개정 2012. 6. 4>
- 아.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 관리<개정 2012. 6. 4>
- 자. 이 대학과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<개정 2012. 6. 4>
- 차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<개정 2012. 6. 4>
- 카. 그 밖에 이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- 타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(,노인,청소년,장애인,아동 등)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 및 시설 수탁 운영<개정 2015. 9. 22 >

## 제2장 조직


- 제5조 (이사)**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명의 이사를 둔다.<개정 2012. 6. 4>  
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- 제6조 (단장)**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교원 또는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 
 <개정 2012. 6. 4>  
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 
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총괄한다.  
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의 2 (부단장)**

산학협력단의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다.

- 제7조 (감사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를 두며,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  
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 
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의 감사, 사업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장에게 보고한다.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1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<b>산학협력단 법인정관</b>	개정일자	2015. 09. 22.
		개정번호	페이지 5/7

**제8조 (하부조직)** ① 산학협력단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창업보육센터, 산업기술연구소를 둔다.  
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, 창업보육센터장, 산업기술연구소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.  
 ③ 제1항의 기관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되,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4>

**제9조 (행정사무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행정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<개정 2012. 6. 4>

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겸직 또는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행정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<개정 2012. 6. 4>

③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2. 6. 4>

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 및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이 대학의 교육,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4>

**제10조 (운영위원회)** ①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2. 6. 4>


### 제3장 재산 및 회계

**제11조 (재산의 종류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**제12조 (운영재원)**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·기부금·보조금
3. 사업수익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1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<b>산학협력단 법인정관</b>	개정일자	2015. 09. 22.
		개정번호	페이지 6/7

**제13조 (수입)**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<개정 2012. 6. 4>
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<개정 2012. 6. 4>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 학과의 설치·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
6. 다른 기관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, 실험·실습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료
7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


**제14조 (지출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제1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
<개정 2012. 6. 4>
4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
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6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경비  
<개정 2012. 6. 4>
  - 가.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
<개정 2012. 6. 4>
  - 나.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
<개정 2012. 6. 4>
  - 다. 제4조 제2항 제7호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<개정 2012. 6. 4>

**제15조 (재무관리의 제한)**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 6. 4>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**제16조 (회계연도)**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<개정 2012. 6. 4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1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<b>산학협력단 법인정관</b>	개정일자	2015. 09. 22.
		개정번호	페이지 7/7

#### 제4장 보칙

**제17조 (비밀유지의무)** 본 정관에서 규정한 각종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2. 6. 4>

**제18조 (정관의 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9조 (해산)**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
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20조 (공고)**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
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

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② 공고방법은 동원대학교 학보로 한다.<개정 2012. 6. 4>

#### 부 칙
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한다.

2. (산학협력 계약 체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3. (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치)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1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<b>산학협력단 법인정관</b>	개정일자	2015. 09. 22.
		개정번호	페이지 8/7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